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lacement & Management

제2판

2015. 4.

본 지침의 발간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존재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rogram, PAD program)

○ 2010년 제1판 ('10.8.12)

- 해당 법률에 근거한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의 기본적인 설치, 운영, 관리원칙에 관한 지침 마련

○ 2015년 제2판 ('15.4.27)

- 설치 및 관리 주체와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추가 보완

목 차

I. 자동제세동기의 개요	1
II.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3
III. 자동제세동기의 신고 및 등록	5
IV. 자동제세동기의 관리	6
V. 자동제세동기의 실태조사 및 관리평가	9

[붙임]

1.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 10
2.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규격 / 15
3.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 / 16
4. 자동제세동기(응급장비) 신고서(양식) / 17
5. 자동제세동기(응급장비) 등록대장(양식) / 18
6. 자동제세동기(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양식) / 19
7. 자동제세동기 전산 등록 및 제출 / 20
8.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28
9.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이론적 배경 / 29
10.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 32
11.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 현황 / 33

※ 행정 사항 관련 내용, 양식은 삭제 함

□ 2015년 주요 개정 사항

페이지	항목	신규/보완여부	변경
1	자동제세동기의 정의	<보완>	정의에 부합하는 필수 기능을 명기
1	자동제세동기의 사용과 한계	<신규>	사용 범위와 한계 명기
2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따른 일반인 면책 규정	<신규>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명기
3	자동제세동기 기관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신규>	기관 내 설치시 장소 선정의 원칙을 제시
4	자동제세동기 설치 안내 표지	<신규>	기관 출입문 및 내부에 설치 여부 및 장소 표지 원칙 제시
7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의 역할	<보완>	기존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구체적인 역할 제시 (매월 1일 점검의 날 설정 등)
8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의 역할	<신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에서 자동제세동기 관련 지침 수립 및 자문 등 담당
9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실태조사	<신규>	매년 1월 설치 대상기관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응급장비 관리 현황과 함께 제출
18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	<보완>	기존 표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디자인으로 변경
30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완>	장비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기 쉽도록 수정
31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이론적 배경	<신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원리를 참고하도록 자료 보강

I 자동제세동기의 개요

□ **정의**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이드라인에 근거)

-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표기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가능

□ 자동제세동기의 사용과 한계

- 자동제세동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 *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나, AED가 필요한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응급구조 연락을 취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치장소 내 관리책임자, 사용자 또는 그 외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심장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지만,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기도 함
 - ☞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것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동제세동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자동제세동기의 종류 및 구성

- 종류 : 고정형(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차량 등)
- 기본구성(최소 요건)

구분	세부내용
본체	○ 전원, 표시부, 스피커, Shock버튼, 건전지 등
전극	○ 심폐소생술 패드 등
소프트웨어	○ 전극 패드 연결 여부 확인 및 안내 ○ 환자에 패드 부착여부 확인 및 안내 ○ 시행 가능 여부 확인 및 시행 지시 ○ 시행자 및 주변인의 전기충격에 대한 주의 안내 ○ 제세동 충격 실시 및 안내 ○ 기타 심전도 모니터링 실시 및 안내 ○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
본체케이스	○ 본체케이스
사용자설명서	○ 한글버전, 제품구성,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자동심장충격기)를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

** 구성은 기기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지역, 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영어 및 기타 언어버전 탑재도 권장

II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설치 장소는 붙임1. 참조)

□ 자동제세동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자동제세동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다만,

해당 기관이 1개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1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
•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등 단일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빠른 제세동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건물이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한 건물처럼 사용하는 곳으로, 미설치건물에서 설치 건물로 달려가 5분 이내에 자동제세동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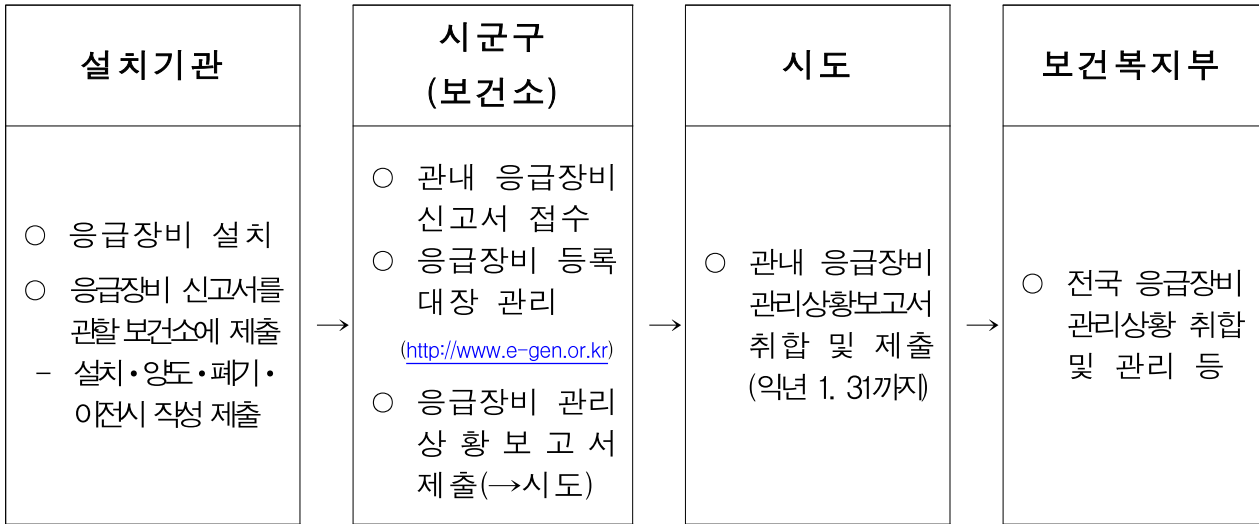
- 자동제세동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2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추는 것
- 자동제세동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

□ 설치 안내 표시

-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붙임3 참조]
-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III 자동제세동기의 신고 및 등록

□ 설치 의무기관의 자동제세동기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 세부내용은 [붙임4] ~ [붙임7] 참조

□ 설치 비의무기관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등록

- 설치 비의무기관의 경우,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 목적으로 등록 가능
 - 등록 시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 위치 정보 대국민 제공

IV 자동제세동기의 관리

□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 (정·부) 지정
 - * 자동제세동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제세동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 관리책임자의 역할

- 설치기관 내 자동제세동기 관리 운영 담당 및 보고
 - * 세부 역할은 다음 페이지 참고
- 설치기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제세동기 위치 및 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 등
 - * 설치기관 운영시간 내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상주(필요시 교대 가능)토록 하고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사용 가능토록 관리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붙임8 참조] 작성 후 3년간 보관)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② 사용내역 관리

- 자동제세동기 사용 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 시군구(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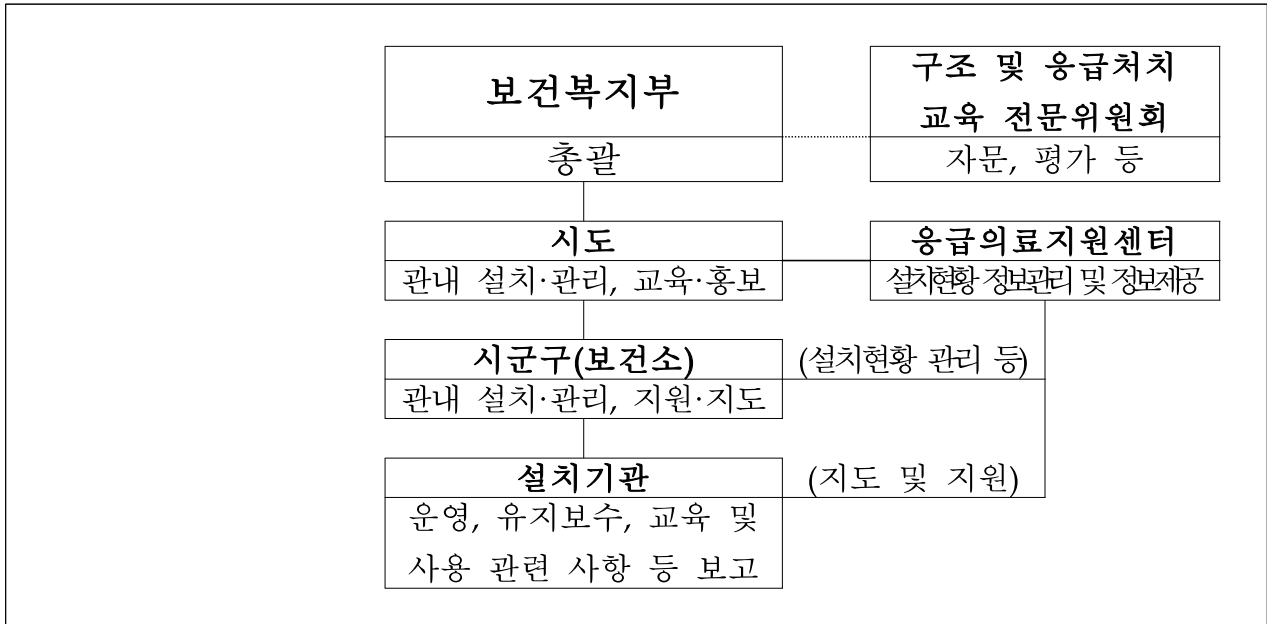
③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붙임9 참고] 및 관리법을 숙지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 관리 운영의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 (<http://www.e-gen.or.kr>)에 자동제세동기 전산관리기능을 개선 중이며, 2015년중 사용 예정 (가능시기 별도 통보)

□ 자동제세동기 관리기관의 관리 운영

○ 관리운영 체계도



○ 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질병관리본부)	○ 자동제세동기 관리운영 체계 총괄 - 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 관리 실태 조사 및 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	○ 세부 설치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자문 ○ 관리·사용 실태 평가 및 권고 등
시도	○ 관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등 총괄 ○ 관내 자동제세동기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시군구 보건소	○ 관내 자동제세동기 신고서 접수 및 등록대장 작성 등 신고·등록·사용현황 파악 ○ 관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및 지도·감독
응급의료지원센터	○ 관내 자동제세동기 설치·운영·관리현황 등 파악(전산관리), 보고 ○ 관내 자동제세동기 관련 대국민·관련기관 정보제공 등

V 자동제세동기 실태조사 및 관리평가

□ 설치기관 실태조사 및 관리상황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관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조사 (12월~다음 연도 1월)
 - 전년 동기간에 비해 관내 자동제세동기를 새로 설치한 기관, 폐기한 기관 현황 일제 조사 실시 (신고 및 등록 제도·홍보 활동 포함)
 - 조사 결과는, ① 법정 의무설치기관, ② 자율설치기관을 구분
 - ※ 별첨된 엑셀 서식에 수정·업데이트하여 서면 제출하고,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 (<http://www.e-gen.or.kr>)도 동시 수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붙임6, 응급장비 관리 상황 보고서] 서식에 작성,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 지사를 거쳐 제출

□ 자동제세동기 관리 평가

- 적용 범위
 - 자동제세동기 관리 현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전반적인 응급처치 관련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적용
- 평가단 운영 : 연 1회 (시도별 연간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 (매년 1.31) 이후)
 - ※ 특정 사안에 따라 별도 수시 평가 운영 가능
- 평가단 구성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보건소, 응급의료지원센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 위원 등
- 평가내용
 - 자동제세동기 관리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기관별, 상황별 관리운영 실태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피드백 제공
 - *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수집된 전산자료 분석 및 기타 현지평가 등 병행 가능

붙임1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p>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u>공공보건의료기관</u></p>	<p>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p>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u>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u></p>	<p>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가안전처장관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구급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p>③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u>여객 항공기</u>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u>공항</u></p>	<p>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p> <p>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p>
<p>④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u>철도차량 중 객차</u></p>	<p>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p>
<p>⑤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p>	<p>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p> <p>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p> <p>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p> <p>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p> <p>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p> <p>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p>
<p>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u>공동주택</u></p>	<p>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공동주택</p>
<p>⑦ <u>철도역사</u>(「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p>	<p>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p>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p>	<p>(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p> <p>다음의 역사는 제외한다.</p> <p>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나. 둘 이상의 사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p> <p>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것 <p>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1. “도시철도”란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결선·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p>
<p>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가. 도로의 노면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p>9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p>	<p>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나.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p>
<p>10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p>	<p>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p>	<p>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2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p>	<p>경륜·경정법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p>	<p>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의)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p>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p>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5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p>	<p>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p>
<p>16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p>	<p>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p>

붙임2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규격

□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규격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크기	① 고정형(스탠드형) : 2단구조 - 40cm(가로)×30cm(세로)×160cm(높이) 정도 ② 고정형(벽걸이형) : 1단구조 - 40cm(가로)×30cm(세로)×30cm(높이) 정도	장비크기에 따라 변경가능
재질	○ 철재 (앞면의 창은 투명아크릴 등 소재 사용)	
주요특징	○ 도난경보장치 (관리책임자 실시간 통보 기능 등)	
내용연수*	○ 본체 : 7~10년 정도 ○ 전극 및 건전지 : 2년 정도	제조사 및 규격에 따라 변경가능

*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를 참조함

□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외부 표시 (예시)

좌·우면 문구(예시)	사진(예시)	정면문구(예시)								
○ 자동제세동기 표시 (한글, 영문 등) ○ 관리책임자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관리책임자</td> <td>홍길동</td> </tr> <tr> <td>비상연락처</td> <td>2023-1234</td> </tr> </table> ○ 자동제세동기 체크리스트 부착	관리책임자	홍길동	비상연락처	2023-123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자동제세동기 표시 (한글, 한자, 영문) <투명 아크릴판> 도난방지장치 설치 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림 심장정지 환자에게 사용 </td> </tr> <tr> <td> AED 사용방법 (그림 및 설명) </td> </tr> <tr> <td> 본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파손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td> </tr> <tr> <td> 설치기관 등 표시 </td> </tr> </table>	자동제세동기 표시 (한글, 한자, 영문) <투명 아크릴판> 도난방지장치 설치 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림 심장정지 환자에게 사용	AED 사용방법 (그림 및 설명)	본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파손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설치기관 등 표시
관리책임자	홍길동									
비상연락처	2023-1234									
자동제세동기 표시 (한글, 한자, 영문) <투명 아크릴판> 도난방지장치 설치 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림 심장정지 환자에게 사용										
AED 사용방법 (그림 및 설명)										
본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파손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설치기관 등 표시										

* ① 고정형(벽걸이형) 크기 ② 고정형(스탠드형) 크기임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설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표준규격에 따라 심폐소생술
Committee on Resuscitation) 가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 (붉은색은 화재/위험의 의미로 제세동기는 안전을

붙임4

자동제세동기(응급장비) 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08.6.13>

응급장비(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서						
신 고 인	설치기관의 명칭		전화		팩스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설치·양도·폐기·이전 일자: . . .				연면적: m ²		
응급장비의 내용						
용도:				상태: <input type="checkbox"/> 신품 <input type="checkbox"/> 중고품		
연번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국 및 제조사		
응급장비 배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div>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양도·폐기·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붙임5

자동제세동기(응급장비) 등록대장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08.6.13>

응급장비 등록대장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1. 설치 기관	기관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2. 관리 책임자 현황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간호 조무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자	기타
	계						
	성명						
3. 응급장비의 설치 현황(총 설치 대수: 대)							
연 번	제품 및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국 및 제조사	설치 장소		
첨부서류: 응급장비 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 시 제출된 서류							

210mm × 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붙임6

자동제세동기(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10.3.19>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구비시설 수/관리책임자 수, 개/명)

구분	설치대상 기관														설치대상 외 기관	
	계	공공보건 의료기관	소방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다중이용시설									
관 할 구 역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붙임7 자동제세동기 전산 등록 및 제출

<전체과정>

응급장비등록대장 > 자동심장충격기(AED)등록 > 자동심장충격기(AED)현황 >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서 입력내용 다운로드 > 공문 제출

1. 인트라넷(portal.nemc.or.kr) 접속 > 기관 ID 입력 > 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

- * ID 신규신청 방법 : “회원가입” 후 해당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승인 요청
- * ID 분실 및 웹사이트 사용관련 문의 등은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문의 [붙임11 참조]

2. 신규 기관 입력 시에는 우선 “응급장비등록대장”부터 작성

- * 관리기관 :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기관(신고를 받는 보건소 아님)
- * 관리책임자현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된 기관의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시행규칙 제38조의3)

사용 그룹	의료자원관리
메뉴 경로	응급자원정보 > 의료정보관리 > AED관리 > 응급장비 등록대장
화면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관리기관을 등록하는 화면
상세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관리기관을 등록

응급장비 등록대장

• 응급장비 관리기관

관리 기관명	연번	연번생성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1.
기관 연락처	개설자 성명	
소재지	우편번호 검색	상세주소

2.

•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

직종	계	성명
의사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간호사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응급 구조사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간호 조무사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자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기타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저장
목록

3. 4.

세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는 기관 정보를 등록 • 관리 기관명: 기관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관리기관 중복확인’ 선택하여 등록 (띄어쓰기 주의) • 기관연락처, 개설자 성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현황을 등록
번호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으로 연번이 생성 됩니다. 2. 우편번호 검색하는 팝업창이 호출 됩니다. 3. 입력된 정보를 저장 합니다. 4. 자동제세동기(AED)의 관리기관 목록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용절차

- ① 왼쪽 타이틀명에 대한 내용을 오른쪽 입력하는 부분에 입력합니다.
- ② 연번의 경우 입력이 불가능하고 연번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③ 왼쪽의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같게 입력해야 합니다.
- ④ 우편번호는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고, 우편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조회하여 선택한 후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 ⑤ 응급장비 관리책임자에서 직종에 해당하는 인원과 성명을 적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⑥ 저장을 하지 않고 목록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 목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1. 앞단계의 “응급장비등록대장”에 작성 된 내용은 “응급장비등록대장현황”에 목록으로 나타나며 동 목록에서 수정 가능

응급장비 등록대장

• 응급장비 등록대장 검색

광역시/도 ==전체== ==전체== 관리기관명

신규등록
 검색
 역설대운

1
 2
 3

총 6625건 (1/663페이지) 10개씩보기

NO	연번	관리 기관명	개설자	설치주소	신고일
6625	20140408-10	관리기관명 테스트7	개설자성명 테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22 (논현동)	2014-04-08
6624	20140408-9	관리기관명 테스트6	개설자성명 테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2길 39-14 (논현동)	2014-04-08
6623	20140408-6	관리기관명 테스트1	개설자성명 테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22 (논현동)	2014-04-08
6622	20140408-5	관리기관명 테스트3	개설자성명 테스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12 (장대동) 하나홀리스	2014-04-08
6621	20140408-4	관리기관명 테스트2	개설자성명 테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길 22-6 (개포동)	2014-04-08
6620	20140408-2	테스트2	test2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5 (논현동)	2014-04-08
6619	20140408-1	테스트관리기관1	테스트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 (논현동)	2014-04-08
6618	20131106-35	길음9구역(레이안9단지)	관리소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	2013-11-06
6617	20131106-36	길음뉴타운2단지(대우)	관리소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0	2013-11-06
6616	20131106-37	길음뉴타운4단지(대림)	관리소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1	2013-11-06

4

<< <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화면 구성	• 조건영역과 조회 목록이 보여지는 부분으로 구분
번호 설명	1. 신규 등록 버튼 클릭 시 자동제세동기(AED)의 관리기관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검색버튼 클릭 시 조건영역의 조건에 따른 조회 목록을 보여줍니다. 3. 엑셀다운 버튼 클릭 시 조건영역의 조건에 따른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4. 그리드의 로우를 클릭 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사용절차

- ① 메뉴 클릭 시 자동으로 전체 목록을 조회합니다.
- ② 조건영역에서 선택 또는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조회합니다.
- ③ 조회된 목록의 로우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④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제세동기(AED)의 관리기관 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⑤ 엑셀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조건영역의 조건에 따른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3. “응급장비등록대장”에 등록된 기관에 대한 AED관련 세부 사항 “자동제세동기(AED) 등록”에 작성

- * 관리기관 :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기관(신고를 받는 보건소 아님)
- * 설치기관 :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비용부담 한) 기관
- (예시1) A아파트가 B보건소를 통해 국고보조를 받은 경우 → 관리기관:A아파트, 설치기관:B보건소
- (예시2) C보건소가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경우 → 관리기관:C보건소, 설치기관:C보건소
- (예시3) D역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설치한 경우 → 관리기관:D역, 설치기관:D역
- (예시4) E종합운동장에서 국고보조받은 장비(1), 자체구입한 장비(2)가 있는 경우
 - 1번 관리기관 : E종합운동장, 설치기관 : 보건소, 2번 관리기관 : E종합운동장, 설치기관 : E종합운동장 자동제세동기가 여러대 설치된 경우 모두 등록

사용 그룹	의료자원관리
메뉴 경로	응급자원정보 > 의료정보관리 > AED관리 > AED 등록현황
화면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기관 등록 화면
상세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기관을 등록 한다.

• 응급장비 관리기관 정보 등록		저장	삭제	목록
관리 기관명	<input type="text" value="관리기관검색"/>	관리자		
기관 연락처	<input type="text"/>			
• AED 설치정보 등록				
설치기관명	<input type="text" value="상동(관리기관명)"/>	기관담당자		
설치기관주소	<input type="text" value="우편번호 검색"/> 상세주소			
설치장소	<input type="text"/>	설치기관연락처		
국고지원여부	- 전체 -	외부표출여부	- 전체 -	
WGS84좌표	· 경도 : <input type="text"/>	· 위도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WGS84 지도"/>	
TM좌표	· 경도 : <input type="text"/>	· 위도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TM 지도"/>	
설치방법	- 전체 -	설치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구비의무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고	<input type="text"/>			
• AED(자동제세동기) 기기 정보 등록				
모델명		제조사		
제조일	<input type="text"/>	제조번호		

화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와 설치기관에 대한 정보, 설치기기에 대한 정보로 구분 • 각 타이틀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구성
세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제세동기(AED) 정보를 입력 • 입력된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관리기관검색: AE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응급장비등록대장' 항목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검색되지 않을 경우 우선 '응급장비등록대장'에 해당기관을 등록해야 한다. '관리기관검색'에서 조회하여 등록 시 '관리자','관리기관 연락처' 자동연동 된다.
번호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된 내용을 저장 합니다. 2. 설치기관을 삭제 합니다. 3. 설치기관의 목록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4. 관리기관검색 팝업을 호출 합니다. 5. 설치기관명을 관리기관명과 같게 합니다. 6. 우편번호 검색 팝업을 호출 합니다. 7. 지도 팝업을 호출 합니다. 8. 지도 팝업을 호출 합니다. 9. 왼쪽의 체크 목록에 따라 오른쪽의 상세체크 내용이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용절차

- ① 각 타이틀명에 해당하는 수정할 내용을 입력부분에 입력합니다.
- ② 관리기관을 변경할 경우 관리기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선택합니다.
- ③ 우편번호를 변경할 경우 우편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선택합니다.
- ④ 지도의 경우 해당 지도 팝업 호출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 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 ⑥ 해당 설치기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⑦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기관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1. “자동제세동기(AED) 현황” AED관련 입력사항 확인 및 수정 가능

사용 그룹	의료자원관리
메뉴 경로	응급자원정보 > 의료정보관리 > AED관리 > AED 등록현황
화면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기관 목록을 보는 화면
상세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기관 조회/등록/수정

AED(자동심장충격기) 등록 현황

광역시/도 ==전체== ==전체== 설치기관명

신규등록
 검색
 엑셀다운

1
 2
 3

AED(자동심장충격기) 등록 목록 총 2881건 (1/289페이지) 10개씩보기

NO	연번	대분류	소분류	설치기관명	설치주소	설치장소	담당
1	11-0006115	중앙행정기관청사(17?		테스트7-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55	테스트7-1	테스트
2	11-0006114	공동주택(500미만)		테스트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7-	테스트7	테스트
3	11-0006113	공동주택(500이상)		테스트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4	테스트6	테스트
4	11-0006112	선박		테스트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11	테스트3-1	테스트
5	11-0006111	(철도)객차		테스트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2'	테스트3	테스트
6	11-0006110	공항		테스트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2	테스트2-1	테스트
7	11-0006109	여객항공기		테스트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22	테스트1-1	테스트
8	11-0006108	119구급차		테스트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11	테스트2	테스트
9	11-0006107	공공보건의료기관		테스트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0	테스트1	테스트
10	11-0006106	의료기관(종합병원, 병		테스트22222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22	테스트2의 설치장소 테스트	MLC

4

<< <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

화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영역과 조건에 따른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구성 • 페이징 처리
세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조회 및 수정 가능
번호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조건영역에 입력 또는 선택된 값에 따라 목록이 조회 됩니다. 3. 조건영역에 따른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합니다. 4.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용절차

- ① 조건영역에 조건을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 ②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조회합니다.
- ③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④ 목록의 행를 클릭하여 상세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⑤ 엑셀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조건영역에 따른 목록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자동제세동기(AED) 사용일지 등록(실제로 사용한 경우)

사용 그룹	의료자원관리
메뉴 경로	응급자원정보 > 의료정보관리 > AED관리 > AED 사용일지
화면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화면
상세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 내역을 등록한다.

화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구성
세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제세동기 사용 시 사용일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하는 방법은 시스템 등록 방법을 제공합니다. • 관리기관: '조회'버튼에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선택 시 설치기관은 자동등록 됩니다.
번호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 입력된 내용을 저장 합니다. 2. 내용을 삭제 합니다. 3. 사용일지 내역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용절차

- ① 타이틀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 부분에 입력합니다.
- ② 관리기관명의 경우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관리기관과 설치기관을 선택합니다.
- ③ 병원이송 유무에 '이송'을 선택 시 이송 방법과 이송병원을 선택/입력할 수 합니다.
-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내용을 저장 합니다.
- ⑤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일지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최종확인 및 다운로드

사용 그룹	의료자원관리
메뉴 경로	응급자원정보 > 의료정보관리 > AED관리 > AED 집계현황
화면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집계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
상세 설명	자동제세동기(AED)의 시/도에 따른 집계된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

• 지역별 AED 집계 현황

광역시/도	==전체==	==전체==	역설다운 검색									
구분	계	구비의무기관						공동주택		1. 2.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소방)	여객 항공기	공항	객차	선박	500 이상	500 미만	철도 역사	여객자동차	항구대합실
대구 수성구	21	1	14	0	0	0	0	4	0	0	0	0
서울 노원구	170	1	0	0	0	0	0	148	0	0	0	0
전남 곡성군	22	18	0	0	0	0	0	0	0	1	0	0
제주 서귀포시	44	8	0	0	0	0	0	0	0	0	0	0
서울 성동구	37	0	1	0	0	0	0	36	0	0	0	0
광주 남구	21	6	0	0	0	0	0	0	0	0	0	0
서울 은평구	7	0	0	0	0	0	0	0	0	0	0	0
총계	2881	6	177	2	3	1	3	1082	0	37	18	0

• 관할 구역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직종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응급처치교육수료자	기타
계	585	1083	486	318	1901	1948

• 응급장비 사용 건수

관리기관	사용횟수
관기기관명 테스트1	2
관기기관명 테스트2	2
부산암아동병원	1

화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영역과 조건에 따른 조회된 내역을 보여주는 부분, 관할구역의 관리 책임자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 응급장비 사용건수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구성 • 시/도에 따른 현황과 총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3항(응급장비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과 관련 별지 제15호의4서식입니다. 자동제세동기기 입력시 전산상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건영역에 따른 집계 현황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2. 조건영역에 따른 집계 현황 내역을 조회 한다. 3. 해당하는 시/도의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팝업 창을 호출 한다. 4. 관할구역안의 설치시설 관리 책임자 현황의 상세내역을 보여주는 팝업을 호출한다.

○ 사용절차

- ① 조건영역에서 조건을 선택합니다.
- ② 조건에 따른 집계 내역과 관리책임자 정보와 장비 사용건수 내역을 보여줍니다.
- ③ 조회된 내역의 행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 ④ 관할구역의 관리책임자 수를 나타낸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① 전원을 켜다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③ 심장리듬 분석



④ 심장충격 시행



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① 자동제세동기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전원을 켜다.
- ② 두 개의 패드를 기계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부위 피부에 단단히 부착한다.
(환자의 옷은 벗기고,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 ③ 자동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접촉을 피하고 기다린다.
- ④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심장충격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후 ‘제세동(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버튼을 누른다.

* ‘심장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시, 그 즉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 ⑤ 제세동(심장충격) 시행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참고]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 자동제세동기의 이론적 배경

-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2초 사이에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형태의 심장정지 환자들의 대부분은 심장의 부정맥이 그 원인인 경우로,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근 수축이 떨어지는 형태로 되면서 심장이 펌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므로 의식을 잃게 됨.
- 성인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부정맥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근 허혈에 의해서 유발되며 대표적으로 심실빈맥(VT : ventricular tachycardia)이나 심실세동(VF : ventricular fibrillation) 등이 있음.
-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은 심장정지의 원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면서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가장 잘 소생하는 형태의 부정맥이나
- 심실빈맥과 심실세동 환자에게 가슴압박 소생술만 시행해서는 정상적인 심박동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으며, 고품질의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신속한 심장충격을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만 정상적인 심박동으로 회복 가능
- 심장충격이란 2,000 볼트 이상의 고압 직류 전기가 심장을 관통하게 함으로써 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전기적 활동들을 일시에 모두 잠재우는 역할을 하며, 이 때 심장의 근육세포들은 한동안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상적인 전기적 활동이 가장 먼저 깨어나면서 심박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리로
-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아닌 심전도 리듬(무맥박 전기활성 또는 심장 무수축)을 보이는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심장충격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 시행해서는 안 됨.

[자동제세동기 사용의 원칙]

- 모든 심장정지 환자에게 무조건 심장충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 심장충격기를 부착하여 분석 후,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지시문이 나오면 거의 100% 확실하게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환자에게는 즉시 심장충격이 시행되어야 한다.
- 심장충격기를 부착하여 분석 후,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지시문이 나오면 정상에 가까운 심전도 소견이거나 심장 무수축이란 의미이다. 이런 환자에게는 즉시 가슴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 주어야 한다.
-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장충격기를 부착하면 안 되며, 만일 의식이 회복된 사람에게 부착된 심장충격기에서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지시문이 나오더라도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심장충격 단추를 누르면 안 된다.

출처 :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강사 지침서, 보건복지부(2014)

P.48-53 내용 발췌 후 수정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붙임10 |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15. 4월 기준)

(단위 : 대)

구분	합계	의무설치 기관							의무 기관 외
		공공 보건의료 기관	119 구급차	공항, 여객기	객차	선박	다중 이용시 설	공동 주택	
합계	18,731	3,873	1,119	101	7	51	739	4,960	7,881
서울	7,053	111	125	14	4	0	132	2,616	4,051
부산	349	57	61	15	0	6	39	53	118
대구	305	32	74	2	0	0	28	52	117
인천	480	76	59	44	1	17	34	89	160
광주	485	20	32	2	0	0	11	76	344
대전	173	37	0	0	0	0	27	10	99
울산	113	32	27	2	0	1	14	2	35
세종	51	22	6	0	1	0	1	3	18
경기	3,344	372	109	0	1	2	99	1,577	1,184
강원	621	302	96	2	0	0	39	56	126
충북	635	280	58	2	0	0	28	100	167
충남	687	400	68	0	0	0	36	4	179
전북	649	429	87	1	0	3	45	32	52
전남	901	589	17	5	0	6	45	0	239
경북	939	579	145	2	0	10	46	36	121
경남	1,046	466	149	1	0	1	59	202	168
제주	900	69	6	9	0	5	56	52	703

* 출처 : 응급의료정보시스템('15. 4월 기준) 등록현황. 전산등록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설치대수와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 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11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 현황

지 역 명	연락처	주 소
서울 응급의료지원센터	02-2133-754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응급의료지원센터
부산 응급의료지원센터	051-254-3114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번지 부산대학교 병원 내 E 동 2층
대구 응급의료지원센터	053-427-0530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50번지 경북대학교병원 내
인천 응급의료지원센터	032-424-174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1198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12층
광주 응급의료지원센터	062-233-133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학동 8) 전남대병원 8동 10층
대전 응급의료지원센터	042-223-510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5층
울산 응급의료지원센터	052-229-3538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구관3층 보건위생과 내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
경기 응급의료지원센터	031-8008-475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경기도청 제2별관 3층 보건정책과(의약관리팀)
강원 응급의료지원센터	033-748-4911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기독세브란스병원 내 응급센터 5층
충북 응급의료지원센터	043-266-612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776)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4층(신관)
충남 응급의료지원센터 (세종시 포함)	041-635-265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번지 충남도청 본관 내 1층 114호
전북 응급의료지원센터	063-276-95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번지(건지로20)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4층
전남 응급의료지원센터	061-274-1339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507-1번지 3층
경북 응급의료지원센터	054-776-1339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8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내
경남 응급의료지원센터	055-286-954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B112
제주 응급의료지원센터	064-710-29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위생과